

## CONTACT



변호사 윤종수

T: 02.6386.6601  
E: [jay.yoon@leeko.com](mailto:jay.yoon@leeko.com)



변호사 강현구

T: 02.772.4429  
E: [hyunkoo.kang@leeko.com](mailto:hyunkoo.kang@leeko.com)



변호사 이정명

T: 02.6386.0730  
E: [chloe.lee@leeko.com](mailto:chloe.lee@leeko.com)



변호사 임승준

T: 02.6386.0795  
E: [seungjun.lim@leeko.com](mailto:seungjun.lim@leeko.com)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는 2023년 4월 2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날 의결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그동안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률안 19건을 통합·조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하에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 ■ 가상자산의 범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 포함)"라고 정의하고,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 자산, 토큰 등 다양하게 혼용되던 표현을 가상자산으로 통일했습니다. 한편, 가상자산이 (화폐로서) 결제에 활용될 경우 발생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는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되었으며,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에 대해선 우선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사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를 위하여 ①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② 고객 가상자산의 분리 보관 및 동일종목·동일수량 보유, ③ 고객 가산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보관, ④ 해킹·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의 적립, ⑤ 가상자산 거래기록의 생성·보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② 시세조종행위, ③ 부정거래행위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하고,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 가상자산의 거래를 제한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입금 및 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도록 하고,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시장에 대하여 이상거래가 있는지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권 및 자료제출요구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 및 검사권을 금융위에 부여하되, 구체적인 검사방법과 절차, 결과 조치기준 등을 금융위가 고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 발견 시 시정명령이나 경고, 주의, 영업정지 등의 조치와 함께 수사기관에 통보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한편,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가상자산시장이나 사업자는 금융시장이나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금감원의 검사권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에 직접 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에 근거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통화는 아니지만 통화신용정책에 참고하고 금융안정 정책 수립에 필요한 점, 자본시장법에서도 금융회사의 통화신용정책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해 한국은행의 자료제출요구권을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 2. 가상자산 관련 법률의 2단계 입법 과정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입법을 2단계로 나눠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번에 의결된 1단계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고,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위에서 정무위는 향후 2단계 가상자산 입법을 준비하기 위해 법률적 의무를 부여하는 부대의견을 다수 채택했는데, 여기에 ① 금융위는 증권형 토큰, 유틸리티 토큰,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규율 체계를 확립할 것, ② 금융위는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를 마련할 것, ③ 금융위는 통합시세 및 통합공시 등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④ 금융위는 사고 발생 시 전자금융거래법과 유사하게 입증 책임의 전환 규정 마련 등 대책을 이번 법 시행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제출, 보고할 것, 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⑥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은행의 자금세탁 위험방지에 관한 개선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3. 시사점

가상자산 관련 법률은 테라·루나 사태 및 FTX 사태로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입법 논의에 탄력을 받았는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의 정무위 소위 통과에 EU(유럽연합) 의회가 2023년 4월 20일 가상자산 규제를 담은 '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을 가결한 국제적 흐름과도 연결됩니다. 이번에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은 추후 정무위 전체 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지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인데, 최근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전국민적 여론이 조성된 만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 통과에 의하여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편입됨으로써 투자자보호 및 신뢰 증대를 도모하며, 가상자산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업계가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이번 1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지 여부를 지켜보면서, 향후 가상자산 발행과 공시 등 시장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2단계 법안의 입법 추이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은 블록체인, 가상자산 및 NFT 등과 관련하여 국내·외 고객을 위하여 심층적인 자문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유) 광장의 블록체인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02.772.4000 | [mail@leeko.com](mailto:mail@leeko.com) | [www.leeko.com](http://www.leeko.com)